무역상무연구
제75권
2017. 8, pp. 117~136.

논문접수일 2017. 07. 28.
심사완료일 2017. 08. 17.
게재확정일 2017. 08. 18.

# 중소기업금융으로서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박 광 서** · 황 지 현*** · 주 령 커****

Ⅰ. 서 론
Ⅱ. 중소기업금융과 무역금융제도
Ⅲ. 무역금융제도의 활용현황 및 세부내용
Ⅳ.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주제어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무역금융,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금융중개지원대출

## Ⅰ. 서 론

2017년 출범한 신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무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역지원제도 중에서 무역정보 제공, 교육 및 연수, 해외마케팅, 자금 및 인센티브, 인력 공급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애로사항으로 자금에 관한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정부의 무역기업에 관한 지원제도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가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무역금융을 중요

* 이 논문은 2016년도 (재)산학협동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제1저자), E-Mail: kspark40@konkuk.ac.kr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강사(교신저자), E-Mail: jee-hyon@hanmail.net
**** 中國 江蘇科技大學(張家港), 商學院, 講師(공동저자), E-Mail: zlk881218@sina.com

하게 생각한다.

무역금융(trade finance)은 넓은 의미로는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개척활동, 수출준비활동, 물품생산, 사후관리 등 수출입 뿐만 아니라 수출입 전후 단계의 경영활동을 포함한 모든 무역활동에 지원되는 대출, 지급보증, 지급확약 등 일련의 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1]될 수 있다.

협의의 무역금융이라 할 때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절차」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원화대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무역금융은 선적 전 금융으로써 팩토링이나 포페이팅 등과 같은 선적 후 금융과는 차별성을 지니며, 주로 Local L/C와 구매확인서[2]를 통하여 수출단계별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 실적 및 L/C를 근거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된 무역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성과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 움직임이 있는 新보호무역 시대에 보조금 논란 등 불필요한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WTO규정 등 국제규범과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과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실증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하여 관련 논문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였으며,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등을 위하여 관련 신문기사 등도 참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참조하였다.

무역금융 관련 선행연구들은 유행에 따라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들이[3] 있으며, 최근에는 모뉴엘사태 등과 관련 수출채권 매입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4]가 발표되었지만, 무역금융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처음이란 점에서 다른 논문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체계와 연혁 및 무역금융의 내용과 활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무역금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화된 환경 하에서 바람직한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박근서, “무역금융상 적정융자의 원칙: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p. 63.

2)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도 내국신용장과 동일하게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된다(2006.8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취급규칙 개정).

3) 서백현(2007), 지식경제부(2011), 조상현(2011), 조상현·정재승(2011), 한국은행(2012), 이진우·박광서(2013), 정윤세·정재승(2013), 한준덕(2016) 등이 있다.

4) 채진익(2016), 허은숙(2015), 박근서(2016) 등이 있다.

# Ⅱ. 중소기업금융과 무역금융제도

## 1.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 1)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체계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목적은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는 크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무역금융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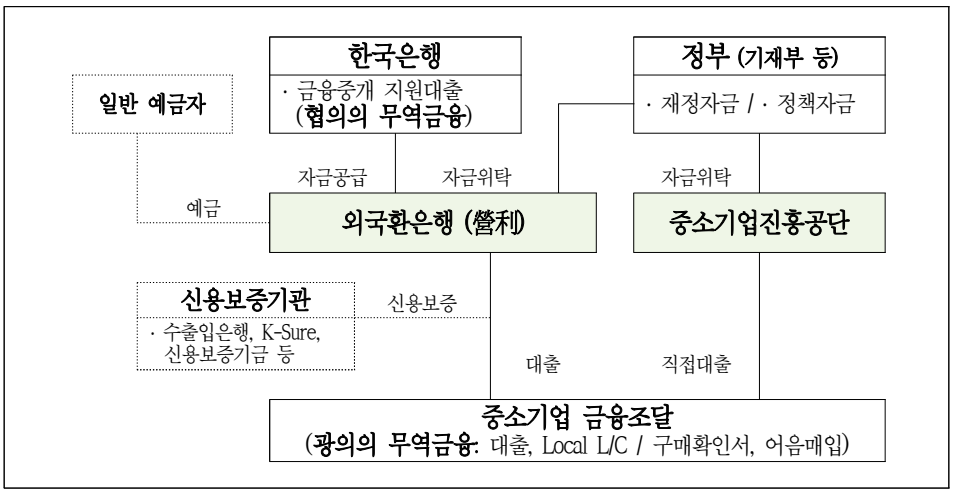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일부 수정 보완함

중소기업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정부자금의 집행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은행의 자금공급을 통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실행하는 외국환은행 등이 있다. 외국환은행도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예금을 받아 한국은행 공급한 자금과 함께 재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게 된다.

### 2) 한국은행 금융지원제도의 체계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수출입금융지원제도[5], 외화대출제도,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시중은행 별도로 한도를 정하여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3년 12월 '총액한도 대출'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중에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무역금융 및 내국신용장제도라고 한다.

<표 1>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단위: 조원, %)

| 프로그램 | 도입시기 | 한도 | 금리 | 지원 목적 |
|---|---|---|---|---|
| **무역금융지원** | **1994.3월** | **4.5** | **0.5** | **· 수출금융 지원** |
| 영세자영업자지원 | 2012.11월 | 0.5 | 0.5 | · 영세자영업자 고금리부담 경감 |
| 창업지원 | 2013.6월 | 6.0 | 0.5 | · 우수기술 보유 등 창업기업 지원 |
| 설비투자지원 | 2014.9월 | 8.0 | 0.75 | · 신규 설비투자 지원 |
| 지방중소기업지원 | 1994.3월 | 5.9 | 0.75 | · 지방 중소기업 지원 |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 프로그램별 한도, 한도 유보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로 조정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한국은행이 낮은 이자(0.5%)로 자금을 공급해 지원해 주면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금 가용성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 2. 무역금융의 의의 및 종류

### 1) 무역금융의 의의 및 특징

금융(finance)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써 비즈니스에서는 기업

5) 수출입금융지원제도에는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무역어음 발행 및 할인 등이 있다.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금융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은 크게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금융(policy finance)은 정부가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출, 보험, 보증 등 각종 금융지원을 말한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원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 산업을 부흥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은행 등 상업적 금융회사들이 시장이 실패한 산업에는 대출 등 자금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에 정부는 낮은 금리 또는 담보 및 상환 조건 등에서 유리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무역금융(trade finance)은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수출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은행이 무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모든 대출 및 지급보증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절차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원화대출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한도를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 및 국내 산업기반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해 수출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원화자금 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을 말한다.[6)]

무역금융제도는 선적 전에 지원되는 금융, 자금의 수출단계별 지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운용,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사후관리제도 운용, 융자취급은행의 제한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무역금융인 선적 전 금융이 중요한 이유는 사후결제방식의 경우 매도인은 단지 매매계약만을 체결했을 뿐이어서 환어음이나 실제 운송에서 사용되는 선적서류(선하증권과 송장) 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적 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있다.

선적 전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추가 담보나 구체적인 판매계약을 수반하지 않고 은행 신용거래 한도 내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거래의 경우에 기업의 한도가 부족하거나, 대금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서류가 제시되기 전까지 혹은 대금이 납부될 때 까지는 새로운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7)].

---

6)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2조.

<그림 2> 무역금융 대체수단 및 선적 전 금융으로써 무역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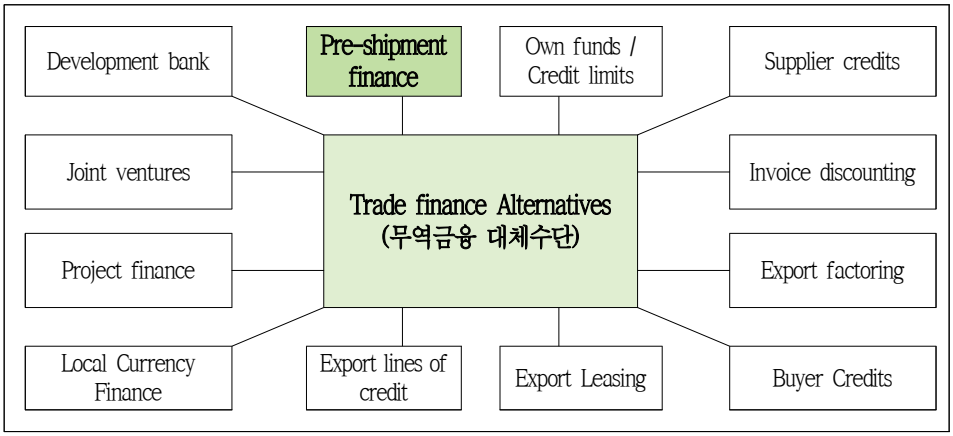


* 자료 : Anders Grath, *The Handbook of Int'l Trade and Finance,* 2nd ed., 2012, p. 135.

### 2) 무역금융의 종류

무역금융은 크게 포괄금융과 용도별 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포괄금융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불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자금의 용도구분 없이 지원하는 금융이다. 용도별 금융은 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수출 단계별, 용도별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무역금융은 수출단계별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생산자금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가공·개발하거나 용역을 수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이다. 원자재자금은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8])에 따라서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완제품 구매자금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 3. 무역금융의 법적 근거

무역금융의 법적 근거는 한국은행법[9]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10] 및 대

7) Anders Grath, *The Handbook of Int'l Trade and Finance*, 2nd ed., 2012, p. 135.
8)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를 말함(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
9)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출세칙[11]과 이들 규정에 근거한 「한국은행 금융 중개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세칙」과 「한국은행 금융 중개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절차」 등이다. 현재의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2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출금융규정」과 「외화표시 공급금융규정」, 「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융자취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그 세칙으로 「수출금융 융자취급 세칙」, 「외화표시 공급금융 융자취급 세칙」,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융자취급 세칙」,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절차로 「수출지원금융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 「평균가득율 및 평균 원자재 의존율 사정절차」, 「수출지원금융 사후관리절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1985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제정한 「무역금융규정('85.11.1.시행)」과 한국은행 총재가 제정한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 및 동 시행절차」과 「평균가득율 사정 및 무역금융 사후관리 절차」 등을 운영하였다.

이어서 1994년 2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를 제정하여 무역금융규정 및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2월 1일, 「총액한도대출」 및 「무역금융 지원한도」의 명칭이 각각 「금융중개지원 대출」 및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명칭 등을 변경하였다. 즉,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으로 변경하고,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로 변경하였다.

---

항을 심의·의결한다.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1~2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0)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11조(금융기관별 총액한도)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기업구매 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의 취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11)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4조(금융기관별 총액한도의 배정기준) 규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별 총액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정한다.

# Ⅲ. 무역금융제도의 활용현황 및 세부내용

## 1. 무역금융제도의 활용현황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지원은 2014.10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14년 13조8,080억원에서 2016년 11조100억원으로 20.3% 감소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2016년 3월 무역금융 대출한도를 1.5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였지만, 대출심사 기준 및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무역금융 관련 애로는 계속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10월 모뉴엘사태[12] 이후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가 대폭 감소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수출실적 감소에 따른 한도 축소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이 감소되어 신용장 비율이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금융기관들이 외상거래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

12) [모뉴엘사태 개요] 박근서,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매입,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3, p. 30, 재인용.
- 모뉴엘(M)은 미국의 N사, A사, 중국의 C사, 일본의 J사 등 수입기업들에게 수년에 걸쳐 전자제품을 수출하였는데 회사 제품들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함.
- M사 대표 박홍석(P씨)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로봇청소기 개발을 통한 난관을 타개하고자 하고, 사옥구매 및 R&D 자금도 확보하려 함.
- P씨는 기존 거래해 왔던 수입자들에게 수출한 것처럼 P/O, 상업송장, 운송서류, 위탁가공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무역금융을 받아 융통하기로 함.
- P씨와 모뉴엘 몇몇 간부들은 사기행위를 매우 치밀하게 모의· 실행함.
- M사가 직접 작성 생산하는 서류인 수출계약서, 상업송장, P/O 등은 평소 거래가 있던 수입자들과 과거 체결한 서류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해 냄.
- 직접 위조나 작성이 곤란한 서류, 즉 수출신고서는 M사 직원을 퇴직시켜 관세사무소를 설립하여 수출신고를 대행하게 함.
- 선적서류 중 운송서류는 소규모 포워더의 협조를 받아 허위로 작성함.
- 국내 거래는 노출되기 쉬우므로 외국에서 현지인도수출한 것으로 꾸밈.
- 많은 금액이 해외 자금세탁 공모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

[모뉴엘 관련자 처벌]
- 2014.12.9. 모뉴엘 파산선고 / - 2015.1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구속.
- <1심 판결: 2015.10.17>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
- <2심 판결: 2016.10.20> 징역 1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2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그림 3> 예금은행 무역금융 취급실적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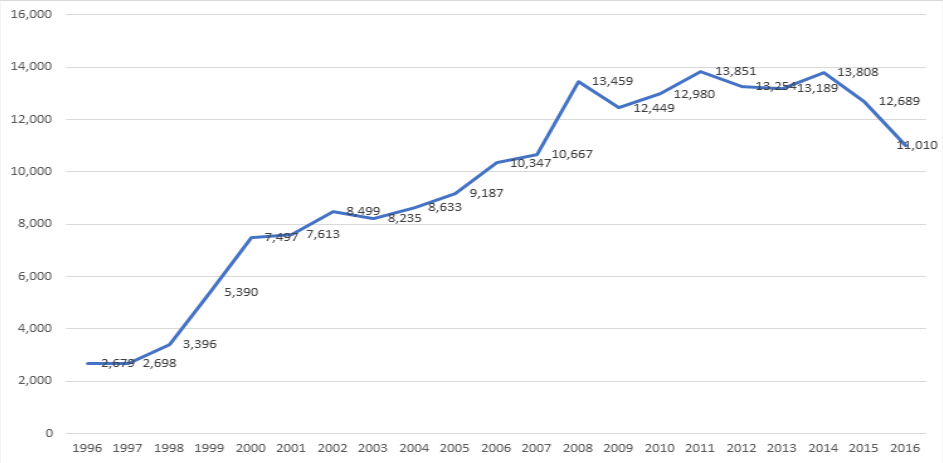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월말잔액 기준)

## 2. 무역금융제도의 세부내용

### 1) 무역금융 융자대상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은 우선 중소기업으로써 수출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 건설, 용역을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자 또는 과거 수출(공급)실적이 있어야 한다.

무역금융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이미 대금을 수령한 선수금 영수조건 계약, ② 중계무역방식, ③ 수출입은행의 인도전 금융 수혜, ④ 완제품 수입자금, ⑤ 결제가 유예된 기한부 수입신용장 등의 경우이다.

무역금융의 취지가 국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수출만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가 증진되지 않는 중계무역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완제품 수입자금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의 상승이 없으므로 제외되지만, 완제품의 국내 구매의 경우에는 무역금융의 대상이 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인 경우에는 국산원자재를 무상 수출한 금액 내에서 원자재 자금으로만 융자가 가능하다.

포괄금융은 전년도(1.1~12.31)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US$5천만 미만인 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 포괄금융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별 금융은 동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실적은 주거래은행이 통합하여 관리하며, 부거래은행은 다음해 1월10일까지 주거래은행에게 수출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 2) 무역금융 융자방법 및 융자기간

무역금융의 융자방법은 포괄금융과 용도별금융으로 구분되며, 모두 신용장기준금융과 실적기준금융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수출업체의 신용장, 계약서, 내국신용장 등을 매 건별로 심사하고, 후자는 기업별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금액을 정하게 된다. 양자 모두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및 포괄금융으로 구분하는 것은 동일하다.

<표 2>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기간

| 종류 | | 기준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 포괄금융 | | L/C | · 수출신용장 等 금액 이내 | · (① 270일, ② 수출신용장 等 유효기일, ③ 선적(인도)기일+7일) 중 빠른 날까지 |
| | | 실적 | ·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수출실적<br>· 향후 1년간 예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의 90% | · 최장 180일 |
| 용도별 금융 | 생산자금 | L/C | · 수출신용장 등 금액×가득률 | · (① 270일, ② 수출신용장 等 유효기일, ③ 선적(인도)기일+7일) 중 빠른 날까지 |
| | | 실적 | · 전월부터 1년간 수출실적×평균 가득률<br>· 향후 1년간 예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의 90%×평균 가득률 | · 최장 180일 |
| | 원자재 (구매) or 임가공 | L/C | · 수출신용장 等 금액×원자재 의존율 | · (① 270일, ② 수출신용장 等 유효기일, ③ 선적(인도)기일+7일) 중 빠른 날까지 |
| | | 실적 | ·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수출실적×평균 원자재 의존율<br>· 향후 1년간 예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의 90%×평균 원자재의존율 | · 물품수령증명서 물품인수일(가장 늦은 것)로부터 180일 |
| | 원자재 (수입) | L/C | · 수출신용장 等 금액×원자재 의존율 | · (① 270일, ② 수출신용장 等 유효기일, ③ 선적(인도)기일+7일) 중 빠른 날까지 |
| | | 실적 | ·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수출실적×평균 원자재 의존율 | · 최장 180일 |
| | 완제품 (구매) | L/C | · 수출신용장 等 금액 이내 | · (① 60일, ② 수출신용장 等 유효기일, ③ 선적(인도)기일+7일) 중 빠른 날까지 |
| | | 실적 | ·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수출실적<br>· 향후 1년간 예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의 90% | · 최장 60일 |

* 자료 : 한국은행

### 3) 무역금융 취급절차

무역금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역금융 융자취급은행을 정해야 되며, 주거래은행은 융자대상 여부 확인, 융자대상 수출실적 확인 및 융자한도 산정, 여신거래약정, 무역금융실행,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 등을 수행한다.

융자한도는 기업이 각 자금별로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를 말하며, 용도별 금융은 자금별로,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정한다. 융자한도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에 평균의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거 1년간 수출실적 US$10만, 여신한도 잔액 2억원, 전월평균 매매기준율 ₩1,000/$일 경우를 가정할 때 융자금액 산출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포괄금융의 경우, 융자 가능 최대금액은 USD100,000×1,000=₩100,000,000이다. 따라서 여신한도가 2억원이라 하더라도 ₩100,000,0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용도별 무역금융의 경우, 상기 동일조건과 만약 원자재 의존율이 70%일 때 최대 내국신용장 개설 가능액은 ① 원자재금융: USD100,000×0.7×1,000=₩70,000,000, ② 생산자금: USD100,000×0.3×1,000=₩30,000,000이다. 따라서 여신한도가 2억원이라 하더라도 ₩70,000,00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표 3>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출

| 구분 | 신용장기준 | 실적기준 |
|---|---|---|
| 원자재자금 | 융자대상 신용장등 금액×원자재의존율[13] | 과거 1년 수출실적×평균원자재의존율 |
| 생산자금 | 융자대상 신용장등 금액×가득률 | 과거 1년 수출실적×평균가득률 |
| 완제품구매자금 | 융자대상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 과거 1년 융자대상 수출실적 |
| 포괄금융 | | |

* 자료 : 국내 ○○은행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수출실적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관세청 통관기준 FOB실적에 국내수출실적을 포함하며, 위탁가공무역 국산원자재 무상수출 실적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 및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수출실적에 포함될 수 있다.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은 수출실적은 생산자금 또는 포괄금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및 인정시점은 수출신용장과 내국신용장은 매입(추심)시 매입(추심)금액, 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는 입금시 입금액, 구매확

13) • 원자재의존율: 원자재 구입 총비용(원자재 의존액)이 수출신용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가득률: 원자재 의존액을 차감한 외화가득액이 신용장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평균원자재의존율: 개별 업체의 수출품목에서 소요되는 원자재 의존액의 평균비율
• 평균가득률: 개별 수출업체의 수출금액에서 평균 원자재 의존액을 차감한 가득액의 비율

인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구매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각각 인정한다. 선수금 영수방식의 수출의 경우는 해당 수출이 이행된 때 인정한다.

무역금융 융자시기는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필요할 때 즉시이고, 원자재자금은 수입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결제 시, 완제품 구매자금은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결제 시이다. 융자기간은 융자취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수출물품 제조 및 수출에 소요되는 1회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융자취급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Ⅳ.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 1. 무역금융 이용실적 확대방안

한국은행이 2016년에 무역금융 한도액을 1.5조원에서 4.5조원으로 3배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관련 대출 심사기준 및 관행의 개선 없이는 취급실적이 확대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이 대출할 때 무역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나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지만, 정작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그러한 보증서나 담보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신규 창업의 경우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출주문을 수령한 경우에 금융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자금이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보증서나 담보 없이 조달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모뉴엘사태 이후 보수적으로 대출심사 등을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무역금융 차입비율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실적기준 금융과 신용장기준 금융을 병행하여 쓸 수 있도록 무역금융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은행에 담보제공 시 수출기업의 담보인정 비율을 상향해 주어야 한다.

무역금융은 수출장려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수출실적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금융 한도 및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출신용 보증한도 산정에서 수출실적을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성장 추세에 있는 기업들은 전년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최근 수출실적이 줄었지만 업력 등을 고려

할 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3년 평균 수출실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금융 기관들이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일괄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신흥국의 우량 거래선을 확보해도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저개발 국가들이 기회와 수익성이 있고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유리하지만 위험 때문에 무역금융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 확대 여력이 큰 개도국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 신용도 보다는 거래선에 대한 신용도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외환부족 때문에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운 국가에 대하여 전대금융[14]과 같은 先금융-後수출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아울러 기술력, 시장성은 있으나 과거 수출실적, 매출액 등 객관적인 지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보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특례지원을[15]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 2.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의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일치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과 대외무역법에서의 수출실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출실적에 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직수출실적＋국내수출 실적＋위탁가공무역 국산 원자재 무상수출 실적＋(보세판매장에서 자가 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외항항공, 외항해상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수출실적은 「직수출실적＋국내수출 실적＋중계무역(수출금액－수입금액)＋외국인도수출(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시(판매액－원자재수출금액－가공임)＋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외국환은행의 확인액)＋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

14) 전대금융(轉貸金融)은 외국소재 은행과 신용한도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 물품 용역을 수입하려는 현지 수입자의 결제자금, 한국 법인의 설비, 운영자금, 현지기업의 한국법인 관련 물품 용역 구매소요 자금에 대해 현지은행 신용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15) 무역보험 특례지원은 경제성이 있는 수출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sure 규정상 제한사항에 걸려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수출초보 및 급증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위원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방식이다.

역협회 등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확인한 금액)+외국인에게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차이가 있다.

대외무역법의 수출실적 인정이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넓게 인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역금융에 적용되는 수출실적 또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무역금융 제외대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무역금융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국산원자재를 무상 수출한 금액 내에서 원자재 자금으로만 융자가 가능하고, 중계무역은 무역금융의 취지가 국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내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수출만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가 증진되지 않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 수출업체의 무역금융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글로벌 생산확산 추세를 반영할 필요하다. 무역금융이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여 수출하는데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이라면, 무역금융 취급절차 제7조 제3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4> 위탁가공무역 실적 인정범위 변경(안)

| | |
|---|---|
| 현행 | ③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하 "위탁가공무역"이라 한다)의 경우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으로 한다. |
| 변경 | ③ … 위탁가공무역의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차액(FOB수출액－CIF수입액)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역금융의 취지를 국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내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수출만 지원하는 것에서 글로벌 생산 및 조달체제를 반영한 외화획득 행위의 지원으로 확대할 때 중계무역에 대한 무역금융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 4. 무역금융의 수입금융으로 확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금융을 수입금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완제품 수입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의 상승은 없지만 무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출입의 균형과 국민의 행복에 있다고 할 때 일정 기준을 갖춘 수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수입자가 적절하게 수입금융을 활용하여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출과 수입에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의 무역금융제도를 구축하여 트럼프 행정부 등 新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역금융제도는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를 설정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금융에 활용되지만 WTO보조금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역금융이 WTO보조금 및 OECD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에 따를 때 금지보조금으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新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수입금융 부분을 추가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금융을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의 개념이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 복합무역(상품+서비스, 서비스+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품중심의 무역금융에서 서비스무역 및 복합무역으로까지 확대된 무역금융제도를 구축하여 非상품무역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류, 문화콘텐츠의 수출, 제조업 공정에 ICT를 결합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무역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5. 무역금융 관련 기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무역금융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 및 지원된 금융의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하우는 현장과 실무경험에서 습득할 수 있는 업무이다.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지원기관은 신용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무역금융 한도설정, 지원결정,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내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와 외부로 구성된 감사시스템을 도입 개선하고, 현장 확인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순환보직 형태의 인력 관리시스템만 가지고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전문가(specialist)를 키울 수 있는 자체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도 보증기관의 보증서만 믿고 대출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출과 같은 수준의 신의성실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직전 년도에 수출실적이 좋았더라도 미래에 실적이 나빠질 수 있고, 특히 기업경영환경이 나빠진 경우에 정책금융을 악용하는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여 건전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정부나 기관에서는 산업 및 기업분석에 전문성을 키우고, 과거실적도 중요하지만 벤처 및 미래기업 등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는 체계와 전문성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금융기관들의 인력[16]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장성, 기술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수출실적, 재무제표 등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기술평가 및 신용담보 방식의 대출을 늘려야 한다.

# Ⅴ. 결 론

중소기업금융으로서 무역금융이 우리나라의 무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011년에 달성한 무역 1조불의 금자탑이 2015~2016년 무너졌지만, 4차 산업혁명과 新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년(2017년)에는 다시 1조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무역이 1조불을 넘어서 세계무역 4강진입 및 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로서 역할을 해 온 무역금융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은행도 무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에 「총액한도 대출」 및 「무역금융지원 한도」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 대출」 및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2016년에는 무역금융 한도액을 1.5조원에서 4.5조원으로 3배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들이 수출증대 및 무역발전을 위해서 무역금융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많은 제도적・관습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역금융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역금융 이용실적 확대를 위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관련 대출 심사기

16) K-Sure는 5명 이내 지사 직원이 중소기업 1,000여개를 관리하고, 은행들도 외환계를 폐지하고 종합상담창구에서 무역금융 취급하여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준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수출실적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금융 한도 및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출심사에 있어서 과거실적보다는 발전가능성 심사에 주안점을 두는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을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실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혼선을 줄이고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무역금융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에 대한 무역금융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위탁가공무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출실적은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조정하고, 글로벌 생산 및 조달체제를 반영하여 중계무역에서도 무역금융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금융으로까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전한 수입자가 적절하게 수입금융을 활용하여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되어야 하며, 수출과 수입에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의 무역금융 제도를 구축하여 트럼프 행정부 등 新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금융 관련 기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무역금융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기업 및 지원된 금융의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기관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

# 참 고 문 헌

기획재정부, “무역 1조불 시대”의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 2011.

김창범, “무역금융과 수출: 동태적 인과성과 정책 우선순위”,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박광서, 무역법규, 제3판, 탑북스, 2017.

박근서, “무역금융상 적용융자의 원칙: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_____,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 매입”,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박세운, “무역금융과 금융제재조치”,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서백현, “내국신용장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한라대학교 논문집 제10집, 한라대학교, 2007.

이진우 · 박광서, “무역금융제도의 전자화에 따른 현황과 개선방안”, 무역상무연구 제5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장명기, “금융위기이후 국제규제와 무역금융의 변화 전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2.

전병영 · 홍길종, “무역금융제도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정윤세 · 정재승,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조상현, “한국의 무역정책방향과 한 · 중 · 일 동반적 관계”, 한국무역학회 2011년 동계 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11.

조상현 · 정재승, “로컬수출 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

채진익, “사례를 통한 무역금융제도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6.

한국금융연수원, 무역금융, 2010.

허은숙,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 -모뉴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5.

한준덕, “내국신용장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6.

KB국민은행, 무역금융실무, 2014.

Anders Grath, *The Handbook of Int'l Trade and Finance*, 2nd ed., 2012.

한국무역정보통신 www.utradehub.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은행 www.bok.or.kr

# ABSTRACT

## The Improvement of the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Kwang-So PARK · Ji-Hyeon HWANG · Ling-Ke ZHOU

Trade finance services have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 trade development history since 1960's. These days the trade environment is confro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trade protectionism. So we need to improve the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Korea trade volume.

Bank of Korea(BOK) also revised the Rule of Korea Trade Finance in 2014 and enlarged the trade fund for commercial banks where they handle the trade financ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in 2016.

This article handl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ommercial banks, which handle trade finance fund, should improve the customs and practice of judge loan for SMEs.

Second, the export volume counting rule for trade loan should harmonize between BOK's Rule and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under the Foreign Trade Act.

Third, the processing trade and intermediate trade also can use the trade finance like other trade.

Fourth, Trade finance should be in balance between export and import finance to defend the new protectionism. It means that the trade finance should expand to import in the certain conditions.

Lastly, the related trade promotion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should improve their skills and abilities for handling trade finance.

Keywords : Trade Finance, Local L/C, Purchase confirmation, Trade finance Alternative, Pre-shipment finance